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09.03.23. (월) 14:00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산업경제위원회

#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박영웅 의원 외 6인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9년 3월 17일

나. 회부일자 : 2009년 3월 18일

3. 제안 이유

- 최근 수입 농산물의 급증과 식생활의 서구화 현상은 우리농산물에 대한 소비량 감소 및 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바른 식생활교육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농업과 농촌 그리고 우리농산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우리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이용한 향토음식의 개발·보급을 통해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킴은 물론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식생활교육은 농업과 농촌의 이해, 전통식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의 내용으로 하고, 도민들의 참여를 위한 기회의 균등 등 교육방향 제시(안 제3조)

- 나.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정책과 지역실정을 고려한 교육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규정(안 제4조)
- 다.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충청북도 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기능제시(안 제5조)
- 라. 농업기술원을 식생활교육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6조)
- 마.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식생활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 방안 규정(안 제7조, 안 제8조)

##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에 처음 제정되는 조례로, 수입농산물의 급증과 서구화된 식생활은 도민의 건강을 저해하고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생활교육이 요구되어 법적 근거 마련은 타당함.
- 다만, 소비자 중심의 식생활 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